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29
----------	-------

발의연월일 : 2025. 9. 12.

발 의 자 : 임오경 · 조계원 · 이기현

강유정 · 홍기원 · 민병덕

서영교 · 정을호 · 한민수

서미화 · 황명선 · 한정애

문정복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개하기까지의 기간을 이른바 ‘홀드백’이라 하는데, 이는 제작사, 배급사, OTT 등 영화업계의 관련 구성원들의 영화업계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없이 업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영화의 상영 시기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화업계를 독식하면서 홀드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전망과 제작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영화의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의 공급 등)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소형영화, 단편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8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의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의 공급 또는 제공에 관

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화상영관에
서 최초로 상영이 개시되는 영화부터 적용한다. 단, 법 시행 기준일
당시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이 계약된 영
화는 제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0조의2(영화의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의 공급 등)</u> <u>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소형영화, 단편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 설></u>	제98조(과태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생략)</u> 4. ~ 6. (생략)	<u>3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한 자</u> <u>3의3. (현행 제3호의2와 같음)</u>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